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6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허종식·강선우·김교흥

윤준병 • 이수진 • 강준현

이훈기 • 민홍철 • 이연희

박성준 • 정일영 • 노종면

최민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"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"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, 용적률 완화 적용,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·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함.

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,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우선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"제1항제3호, 제5호 및 제6호"를 "제1항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11호 및 제11호의2"로 한다.

11의2.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43조의2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우선 매각하는 경우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2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매각) ①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 또는 임대의무기 간이 경과한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입주한 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 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 하여 매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매수를 거절하거나 매수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.
- 제65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0.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 대상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초과한 가격으로 매각 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	제6조(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)
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임대	①
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	
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.	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	
말소하여야 한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1의2.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
	민간임대주택을 제43조의2에
	따라 임대의무기간 내에 우선
	매각하는 경우
12. ~ 17. (생 략)	12. ~ 17.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	②
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	
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. 다만,	<u>제1</u>
<u>제1항제3호, 제5호 및 제6호</u> 의	항제3호, 제5호, 제6호, 제11호
경우는 제외한다.	및 제11호의2
	<u>.</u>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3조의2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
	의 임차인 우선 매각) ① 공공

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
자는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
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
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
간 중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
과한 후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
게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신고한 후 입주한
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
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
임차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매 매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임차 인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사 업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

제65조(벌칙) ① (생 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8. (생 략) <신 설>

③ (생 략)

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매수를 거절하거나 매수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.

제65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- (2) ------------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10.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 각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매 각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초과 한 가격으로 매각한 자
- ③ (현행과 같음)